

초대의 말씀

서울올림픽 이후 많은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가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이주국가로서 자리 잡기 시작한 지도 벌써 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주배경 국민과 이주자의 수가 전체 인구의 3%에 달하고 있습니다. 90년대 혼란기를 거쳐서 2000년대에는 이주자의 적응과 원주국민과의 공존을 위한 법체계의 정비가 있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하여 외국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국적법, 난민법 등 주요 법률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습니다.

여러 법률과 제도들이 외국계국민과 이주자, 원주국민 사이의 관계를 적절하게 규율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주 1세대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초기 이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제도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숙함과 혼란을 지나서 원주자와 이주자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존과 발전’을 위한 ‘차세대 이주관련 법제의 정비와 제도’ 마련이 필요한 때가 된 것입니다.

저희 SSK이주·사회통합법제체계연구단은 한국연구재단의 사회과학 기초사업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인 이주자와 외국인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연구하여 왔습니다. 법제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저희 연구단은 입법분야와 연구성과를 공유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입법조사처와의 공동학술세미나는 저희 연구단의 문제의식과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좋은 법’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입법조사처와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며, 저희 연구단에게는 커다란 영광입니다. 공동학술세미나를 흔쾌히 허락해주시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님을 비롯한 입법조사처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성과 교류를 위한 장을 마련해 주신 한국연구재단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이지만 다음세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정책마련에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들께서 이번 공동학술세미나에 참가하여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6년 6월 10일

SSK 이주·사회통합법제체계연구단

단장 최윤철(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